

# 최근 개정된 교통관련 법규와 해설

宋 南 起

(도로교통안전협회 경기도지부, 교수)

교통여건이 계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교통 관련 법규도 개정되고 있다. 레미콘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로서 알아야 할 교통 관련 법규 가운데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 등 그리고 정기 국회에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1.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해설

1994년 9월 5일 대통령령 제 14374호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1) 도로를 통행하는 때의 등화

모든 차가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 켜야 하는 등화 가운데 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한다고 하여 택시는 실내조명등을 켜고 도로를 통행하여야 하지만 자가용 승용자동차는 실내조명등을 켜지 않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정비불량자동차등의 정비 확인

자동차등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에 의

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시키거나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정비 불량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등이 운전되고 있는 때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 대하여 그 차의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불량 상태의 경중에 따라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게 하거나 또는 교통 상황을 참작하여 구간과 통행로 및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뒤에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 (3) 운전면허시험 응시지역 제한 해제와 병력(病歷) 신고서 제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했다. 그리고 예외로 복무중인 현역 군인,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대원, 복역중인 소년원생 또는 교도소의 재소자는 그 부대, 소년원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보며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류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주된 체류지를 주소지로 본다고 하였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에서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적체가 심한 운전면허시험장을 주소지로 하고있는 사람은 응시 기회가 길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응시를 할 경우에는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병력신고서를 첨부하여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4) 신체장애자의 운전면허종별 취득의 제한 철폐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응시자의 적성 기준에서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어야 하며 다만 보조 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고 하여 제한을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제1종 운전면허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제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제1종 운전면허는 매 3년, 제2종 운전면허는 매5년이 되는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적성검사 결과 적성 기준에 맞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제1종 운전면허도 매 5년마다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1회에 한하여 이미 받은 운전면허증에 합격 표시를 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운전면허시험 응시 지역 제한은 철폐하였으나 정기적성검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서울, 부산)에서 하여야 한다.

#### (6) 도로교통안전협회비의 인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매월 60원에서 80원으로,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매월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므로 제1종 운전면허정기적성검사를 받는 운전자는 매 3년에서 매 5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1994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정기적성검사를 받는 운전자는 도로교통안전협회비를 720원 더 납부하여야 한다.

###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해설

#### (1)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종별로 지정되어 있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지만 고속도로는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차로의 명칭에 따라서 통행을 하여야 한다. 즉, 주행할 때에는 주행차로로 주행을 하고 앞지르기 할 때만 앞지르기차로로 앞지르기를 한 다음 다시 계속 주행을 할 때에는 주행차로로 통행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체증이 심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크기 때문에 특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17인승 이상의 버스에 대해 우선 통행하도록 하였다.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통행한 때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의 기초가 되는 벌점(20점)을 부과한다.

지난 추석 명절 때 경부고속도로 양재 인터체인지부터 신탄진까지 하행선에서만 실시를 한 결과 큰 효과를 봤으나 상행선에서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가 불편하였다. 그러므로 설날에는 상행선에서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1995년도에는 토요일 24:00에서 일요일 24:00까지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 (2) 제1종 특수면허시험 응시자격 강화

제1종 대형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제1종 특수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도 21세 미만이거나 자동차등의 운전경험이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받고자 하거나 운전경력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경력 증명발급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운전면허증은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교부받고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 운전을 하여야 한다. 관할 주소지 외의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도록 하였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만 하면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후에 운전을 하여야 한다.

## (4)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운전면허증을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읍, 면, 동의 장에게, 주소지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할 때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읍, 면, 동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의 장이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해설

### (1) 신설된 용어의 정의 (2조)

도로교통법규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하였다.

#### 1) 중앙선(中央線)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방향별로 통행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점선 (가변차선을 포함한다) 등의 교통안전 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 철책, 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중앙선은 반대 방향의 차량에 대해 통행을 구분해 주는 시설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차마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으로 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면 차의 일부분이 중앙선을 걸쳤을 경우를 뜻하지만 대부분의 관례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계속적으로 좌측으로 통행할 의사가 나타난 경우를 뜻하고 부득이한 경우의 중앙선 침범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대부분 처리되고 있다.

#### 2) 차로(車路)

차로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현행법에서 차선경계선을 차선으로 잘못 알고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많아 도로상에 그어져 있는 백색 점선을 걸쳐가기도 하고 타고 가는 운전자가 있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백색실선 또는 점선으로 차로와 차로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에 표시한 차선과 차선 사이인 차로의 중앙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다. 즉 차마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종별로 지정된 차로의 중앙으로 통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차로가 설치된 도

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그 차마의 너비가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 또는 원활한 소통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통행 수단으로 신고 다니거나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차선(車線)

차선이라 함은 차도상의 차로와 차로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한 선을 말한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백색 실선 또는 점선으로 같은 방향으로 통행하고 있는 차량을 구분하기 위하여 그어져 있는 차선과 차의 중앙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현행법의 차선 경계선의 명칭을 변경함) 그러므로 차선을 걸쳐가거나 타고가는 행위는 지정차로의 중앙으로 통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로 위반이 된다.

### 4) 가변차로(可變車路)

가변차로라 함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현저히 다른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 확대가 가능하도록 신호기등에 의하여 중앙선을 변경할 수 있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차로는 2차로, 4차로, 6차로와 같이 짝수 차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가변차로의 경우에는 3차로, 5차로와 같이 홀수 차로로 되어 있으며, 녹색 화살표시의 등화(하향) 차로로 통행을 하여야 한다.

### 5) 안전지대(安全地帶)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즉 보행자 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광장, 교차로 지점, 노퍽이 넓은 도로의 중앙 지대 등의 장소에 설치한다. 차마는 안전지대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 6) 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 保護區域)

(11조의 2)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함은 국민학교 주변 도로 중 어린이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한 일정 구역을 말한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국민학교 주변 도로 중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범위, 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 교육부, 건설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우리 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설치하여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상자를 예방하고 감소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이 운전자와 부모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운전자는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운전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경음기 사용은 물론 과속, 난폭운전, 신호 위반, 무리한 앞지르기 등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 (2) 신호기등의 설치 및 관리 규정 개정 (3조)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하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유료도로에서는 도로관리자가 시, 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 (3) 도로의 횡단 규정 개정 (10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 보도, 지하도, 육교 그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양쪽 방향으로 통행되는 차도에 설

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횡단보도 내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 표시선까지 또는 횡단보도를 걸쳐 정지하는 운전자때문에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의 사상자가 많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횡단하는 것이 즉, 횡단보도의 우측을 통행하는 것이 횡단보도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을 개정하였다.

#### (4)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13조의 2)

시,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노선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선버스 외의 차마는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횡단등의 금지, 교차로 통행방법, 보행자의 보호 규정 개정(16조, 22조, 23조 및 24조)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회전, 유턴(U-Turn) 또는 후진하여서는 안된다.

현행법에서는 보통 좌회전을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우회전을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거나로 쓰고 있어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회전, 우회전으로 규정을 현실화시키고 회전을 유턴(U-Turn)으로 용어를 바꾸었다. 그리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그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말아야 하며,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그 횡단보도 안에 정지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또한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 (6) 차사이의 거리 확보와 진로 변경 및 급제동 금지를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 규정 (17조 내지 17조의 3)

차사이의 거리확보는 안전거리 확보로 용어를 바꾸었으며 진로변경 금지를 신설하여 모든 차의 운전자를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뒷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 진로를 변경하고자 한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개정하였다. 특히 진로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운전석에 앉아서 후사경이나 실내후사경으로 보이지 않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개를 좌, 우 어깨 넘어까지 돌려 다른 차를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 후 적어도 3초간 깜박인 다음에 핸들을 조작하여야 한다.

#### (7) 앞지르기의 시기와 장소 및 끼어들기의 금지를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 규정 (20조 내지 20조의 3)

앞지르기 금지를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앞지르기 금지의 장소, 끼어들기의 금지로 개정하고 특히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교차로, 터널 안 또는 다리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내리막,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한 곳으로 하여 다리 위나 비탈길의 내리막에서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법이나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그밖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 (8) 철길 건널목 통과 중 정지시 조치 규정 개정 (21조)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하며 다만,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특히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 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이를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알리는 동시에 그 차를 건널목 외의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9) 긴급자동차의 우선 규정 개정 (25조 3항)

긴급자동차의 증가로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규정에 보행자의 안전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였다.

## (10) 서행할 장소와 일시정지할 장소를 별도 조문으로 분리 규정 (27조, 27조의 2)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는 서행만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정지하도록 하였다.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여야 하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 (11) 승차 또는 적재 규정의 통합 (35조)

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 규정은 승차 인원,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의 초과 금지와 승객 및 화물의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가 각각 다른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고 운전 장치의 조작 등 안전에 방해될 방법으로 승

차 또는 적재하지 못하게 보완하였다.

### (신설된 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외에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싣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와 중앙경찰서 앞 육교의 과적 트레일러에 의한 붕괴 등으로 과적 차량에 대한 한강 다리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으며 적재 높이의 제한에 대해서도 교통안전표지로 규제하고 있음을 명심하여 항상 법규를 잘 지키며 운전하는 운전자가 되어야 한다.

## (12) 도장 및 유사표지의 제한 등의 규정 개정 (39조)

일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또는 특별 적용을 받는 긴급자동차와 비슷한 등화, 색깔, 장치 및 표지 등의 장치를 하여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단속용 자동차, 수사기관용 자동차, 그밖의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비슷한 등화, 색깔, 장치 및 표지 등의 표시를 한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13) 주취 중 운전 금지 규정 개정 (41조 1항)

경찰관의 주취 측정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 측정은 합법적일 수 없다는 법원의 견해가 있어 교통사고 조사시에도 음주 측정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다.

**(14) 운전자의 준수사항 규정 개정  
(48조 3호, 4호, 12호)**

택시의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금지와 썬팅, 속도측정기 탐지용 초단파탐지기 등 부착 금지 및 초보운전 표시 의무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보완하였다.

·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송 계약을 중복되게 하여 합승 행위를 하거나 운송 약관에 정한 운송 계약을 일방적으로 맺지 않는 승차 거부 또는 인가된 요금 이상의 부당한 요금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초단파탐지기를 설치하였거나 그밖의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로에서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되는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종,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15) 사고 발생시의 조치 규정 개정  
(50조)**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사람을 사상하지 않고,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며,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였다.

(단서 신설 내용) 다만,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고용주 등의 의무 규정 개정(52조)**

무면허, 주취, 과로 등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운전자에 대하여는 고용주 등이 운전을 시키는 것은 물론 운전을 하지 못하게 말리도록 되어 있는 범위가 자동차등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차로 확대하였다.

**(17)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규정 개정 (64조)**

도로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간, 구간, 시기 등만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규제할 때에는 필요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사로 인한 사고 예방과 훼손된 교통안전 시설의 원상 복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18) 면허증 교부 등 규정 개정(69조)**

운전면허는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사례가 있는 등 면허의 효력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다.

**(19)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규정 개정  
(70조 2항 내지 5항)**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최고 2년으로 된 것을 무면허, 주취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중 사고 야기 도주의 경우는 5년, 일반 사고 야기 도주의 경우는 4년, 주취 운전 중 사고 야기 3회 이상은 3년,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 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는 대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한 때에는 6월로 대폭 완화하였다.

**(20)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규정 개정(78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사유에 운전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를 추가하고 면허정지처분 대상자

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정지에 갈음할 수 있게하는 외에 점수제 행정처분 및 전산 입력 누산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통지 등 구체적인 기준 절차의 위임 근거를 명문화 하였다.

#### (21) 면허증 보관 규정 개정 (99조)

이 법의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자라도 1회 위반으로 취소 또는 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면허증을 회수치 못하게 하였다.

#### (22) 벌금 상향 조정 (111조, 112조)

과로등 운전 금지 위반과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위반자 및 안전운전관리자의 교육미필 등 처벌 강화를 위한 벌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3)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등 금지 위반,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즉결 심판 회부로 국민 불편과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바 이를 통과 처분으로 대체하고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이의 시정과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113조)

(24)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회전 위반, 주, 정차 위반 등 사고 요인 및 소통 저해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113조)

### 4.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등의 개정

- 승용자동차와 소형 승합자동차는 자동차 당권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말소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전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있다.
-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 변경 등록이나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하던 과태료를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 15일 이내에 주소 변경 등을 등록 신청하지 않을 경우 초과 기간 3개월까지는 2만원, 이후엔 3일마다 1만원씩을 가산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동차 검사를 안할 경우 과태료는 초과 기간 1개월까지는 2만원, 이후엔 3일마다 1만원씩 가산해 최고 30만원의 부과하도록 하였다.
- 시 도지사가 제시하는 자동차 등록번호 중에서 수요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교통안전진흥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던 자동차정기검사를 정부에서 지정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정의 기간 내에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를 받도록 명하던 최고 절차를 폐지하고 검사 미필자에 부과하던 벌금 및 과태료를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완화하였다.
-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동차의 형식 승인 신청 전에도 분야별 안전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1996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차와 기존 차량 중 번호판을 바꾸는 경우에 새 번호판을 부착한다.  
새 번호판은 차종기호는 두자리로 바뀌고 현행보다 글씨가 굵어진다.  
일련번호는 현행보다 굵고 커지며  
용도기호는 명조체에서 견출고딕체로 바뀌어 굵고 커진다.

이상과 같이 도로교통법규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등록령이 교통여건의 변화와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따라 많이 개정되었음을 잘 알고 안전운전으로 너와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가정의 행복을 이룩하는 운전자가 되기를 바란다.